##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2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박충권·백종헌·박성훈

박준태 • 엄태영 • 안철수

김정재 · 김선교 · 고동진

안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44조의11신설 등).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로 한 다.

1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 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 보
-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	
	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	
	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② <u>제1항제1</u>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		
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	<u>,</u>	
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		

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u><신 설></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명예훼 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4. (생 략) ② (생 략) 술 동향 파악

-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

   진
- <u>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u><u>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u>육·홍보
-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1조(벌칙)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 10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를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 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 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 한 자
- 11. ~ 1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